

『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상조 의원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,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,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”에 대한 정의 규정 및 “벤처기업”에 대한 정의 규정 변경(안 제2조)
- 기금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존속기한 조항 신설(안 제3조의2)
- 지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·관리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5조, 20조, 21조)
-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(안 26조)
-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조항 신설(안 제26조제2항)
- 상위법 따른 기금관리 공무원 변경(안 27조)
- 상위법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관련 내용 변경(안 2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,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
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2016년 2회 추경예산에 6억원 반영 계획
- 부서의견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

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설치
운영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항을 일부
개정하여,
- 갤럭시노트7 단종 조치와 미국 금리인상 예고 등 글로벌 악재로
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
펀드 출자를 통한 유망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, 기금의
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
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
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